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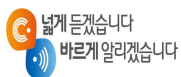


|  |                                      |               |   |
|--|--------------------------------------|---------------|---|
|  <b>기획재정부</b> |                                      | <h1>보도자료</h1> |   |
| <b>보도일시</b>  | 2020.1.21.(화) 10:00                  | <b>배포일시</b>   | 2020. 1. 21.(화) 09:00   |
| <b>담당과장</b>  |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장<br>하승완 (044-215-5370) | <b>담당자</b>    |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br>김영웅 사무관<br>(044-215-5371)<br>ssuper84@korea.kr |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신고 포상금 확대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인센티브 강화 -

- 정부는 1.21.(화)에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 금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 국민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규모를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정률화하였으며,
  - 소액사건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 설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 정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후속조치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mailto:moefpr@korea.kr)



□ 추진 배경 및 경과

- 정부는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14년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부정수급 근절노력을 지속
  - 그러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
-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정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19.10.8 국무회의) 논의·확정
  - \* (주요내용) ①점검·신고 강화 ②처벌·제재 강화 ③사전예방 인프라 정비
  - 현재, 포상금 최대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포상금 지급액을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어 신고 활성화를 저해
    - \* (현행) 2억원 한도, 환수금액의 30% 이내에서 부처 자율 결정 → 다수 부처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소극적으로 운영, 부처마다 지급기준이 상이
  - 신고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결정

□ 주요 내용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2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함 (안 제18조 제2항 개정)
-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제2항 단서 신설)
  - 또한, 소액사건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제2항 단서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                                     |   |   |
|--|---|----|------|----------------------------------|-------------------------------------|---|---|
| <p>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br/>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p> | <p>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br/>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754 1059 1286 2018"> <thead> <tr> <th data-bbox="754 1059 1010 1122">구분</th> <th data-bbox="1010 1059 1286 1122">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54 1122 1010 1352">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td> <td data-bbox="1010 1122 1286 1352">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td> </tr> <tr> <td data-bbox="754 1352 1010 2018">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td> <td data-bbox="1010 1352 1286 2018">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td> </tr> </tbody> </table> | 구분 | 지급기준 |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구분   | 지급기준  |    |      |                                  |                                     |   |   |
|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    |      |                                  |                                     |   |   |
|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                                  |                                     |   |   |